일본의 3차례 경기부양대책별 이행현황 및 FY2009년 예산반영 상황

실시여부	고용대책	사회보장
2008년중 실시완료	○ 주택·생활 대책(전국의 주된 고용안정센터 (190군데)에서 상담 원조 (12월15일보다 실시)) 【생활 방위 대책】 (2차 보정, 21년도 예산계 300억엔정도) - (고용정지)雇결정타(멈춤)·해고된 노동자를 퇴거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무상으로 주택을 대여하는 사업주에게 조성 (대상노동자 1명에 대해서 1개월당 4～6만엔, 6개월까지) - 주택·생활 자금의 대부 (12월22일부터 실시) ・ 주택입주 초기 비용등의 자금대부(최대 186만엔 (고용 보험 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60만엔), 노동 금고, 연리 1.5%) 6개월후에 취직하고 있었을 경우는, 상기대부를 일부상환 면제 - 고용 촉진 주택의 최대한의 활용 (12월15일부터 실시)～입주 결정 건수 1,790건 (12월15일～1월6일 누계) ・ 폐지 결정하고 있지 않은 고용 촉진 주택(하늘문 약 1만3000호, 평균 집세 약 2만5000엔)을 최대한활용하고, 사원기숙사의 퇴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직자등의 주택을 확보 ○ 고용 유지 대책 【안심 대책】 【생활 대책】 【생활 방위 대책】 (1차 보정, 2차 보정, 21년도 예산계 545억엔정도) -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등에의 지원 ・ 고용 조정 조성금의 조성율 끌어 올려 (3분의 2→5분의 4)등 ・ 고용 조정 조성금의 지급 요건의 완화 및 대상노동자의 확대(고용 기간이 6개월미만의 고용 보험 피보험자에의 적용 확대) (12월9일에 소급)등 ○ 해고·(고용정지)雇결정타(멈춤) 등의 노동조건문제에의 적절한 대응 - 노동 기준감독서 등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해고·雇결정타(멈춤) 예방 등의 계발 지도 등 ○ 상담 체제의 충실(일부의 고용안정센터 및 감독서의 12월29일 미쳐 30일(10:00～17:00)의 개청) ○ 비정규고용 대책등에 관한 지원 【안심 대책】 (1차 보정:100억엔 (일부중복)) - 노동자파견 제도의 재검토 ・ 노동자파견 제도의 재검토(개정법을 임시국회에 제출)을 행하는 동시에, 위법파견의 일소를 향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 등 - 비정규고용 대책등의 추진 ・ 연장 시간제 근로자 등(25～39세)의 젊은이를 중점에 트라이얼 고용 제도의 활용에 의한 취직 지원(12월1일 시행) - 잡·카드 제도의 정비·충실로서, 직업훈련 기간 동안의 생활 보장을 위한 급부에 관한 제도를 창설 등 - 고령자등의 취로지원 ・ 65세이상의 고령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한 조성의 신설(12월1일 시행)등 ○ 산업계에 대한 임금·고용 확보의 요청 【안심 대책】 【생활 대책】 ○ 지방 공공단체가 행하는 긴급대책에의 재정지원 【생활 방위 대책】 - 지방 공공단체가 이직자등을 임시적으로 고용 등 할 경우, 특별교부세에 의해 지원	○ 의료의 안심 확보 【안심 대책】 (1차 보정 약 3,200억엔) - 고령자의료가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책 <구체적인 대처 > (2008년도의 조치)장수의료제도에 있어서의 저소득자의 보험료의 경감 시읍면에 의한 소학학군체가 세심한 상담이나 설명회의 실시 (2009년도의 조치) 70～74세의 의료비자기부담 증가(1할→2할)의 동결 조치의 계속 장수의료제도피보험자(피부양자이었던 쪽)의 보험료부담 경감(9할 경감)의 계속 - 의료체제의 확보 ・ 국민의 의료에 대한 불안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서, 지역의료의 확보, 의사부족이나 근무의사에의 대응 등 의료체제의 확보를 향한 대응을 강화 <구체적인 대처> - 의사파견에 협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의 강화 - 지역에 있어서 관제탑기능을 짊어지는 구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의 실시 등 -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의 강화 ・ 抗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약이나 백신의 비축 등을 행하는 동시에, 물가대책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감염 방호의 자기재의 정비 등 ○ 연금기록 문제에의 대응 【안심 대책】 (1차 보정 약 200억엔) - 「연금특별편」의 폴로우 업(follow-up) 등에 의해, 미통합 기록의 해명·통합을 착실하게 추진 - 종이대장의 전자영상화 등에 의해, 온라인(on-line) 기록과의 대조작업 추진 ・ 8.5억건의 대장을 2009년중에 전자화해, 온라인 기록과 지대장을 대조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실시 ○ 출산·육아 지원 【안심 대책】 (1차 보정 약 100억엔) - 탁아소긴급정비 ・ 탁아소분원의 시설 정비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나 분원을 차용할 때의 사례금등에 대해서 조성(정원 약 10,000인분) - 인정 어린이원 긴급정비 ・ 국· 지방에 의한 유치원·탁아소의 틀을 넘은 종합적인 재정지원을 행하는 것에 의해, 인정 어린이원의 긴급정비를 실시

실시여부	고용대책	사회보장
2차추경예산 및 FY2009년 예산 반영	○ 고용 유지 대책 【생활 방위 대책】 (2차 보정, 21년도 예산계 500억엔정도 (일부중복)) - 자사에서 일하는 파견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의 장려금의 창설 등 ・ 파견처 사업주가 받아들이고 있는 파견 노동자를 직접 새로 고용하는 파견처 사업주에게, 1명에 대해서 100만엔 (유기고용으로 고용할 경우는 50만엔) (대기업은 각 반액)을 지급 ○ 재취직지원 대책 【생활 대책, 생활 방위 대책】 (2차 보정, 21년도 예산계 4,800억엔정도) - 지방 공공단체에 의한 고용 기회의 창출 ・ 「고향 고용 재생 특별교부금(가칭)」이 신속한 실시(생활 대책으로 2,500억엔 (노동보험 특별 회계))지방 공공단체가, 민간 기업 등의 고용 기회창출(원칙 1년의 고용계약)을 지원 【사업예】그 지방 산품의 개발, 판로개척 사업등 ・ 「긴급고용 창출 사업(가칭)」의 창설 (새로운 고용 대책으로 1,500억엔 (일반회계))지방 공공단체나 실버 인재 센터 등이, 직장을 잃어버린 비정규노동자·중고연령자를 대상에 일시적인 고용·취업 기회(6개월미만의 고용계약)을 창출 등 【사업예】내진(학교내진화를 향한 조사), 환경·지역진흥(삼림정비)등 - 연장 시간제 근로자 등(25～39세)의 적극고용을 지원 ・ 연장 시간제 근로자 등(25～39세)을 정규고용하는 사업주에게, 1명에 대해서 100만엔 (대기업50만엔)을 지급 - 이직자훈련의 실시 규모의 확충 등, 안정 고용의 실현을 향한 장기간훈련의 실시 - 중소기업등의 인재육성·잡 카페에 의한 매칭의 촉진 등 ・ 급속히 악화된 고용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, 잡 카페의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 ○ 내정 취소 대책 【생활 방위 대책】 (2차 보정, 21년도 예산계 3억엔정도) - 내정 취소의 방지 ・ 내정 취소에 관한 상담, 기업지도 등의 강화 (이미 시작하고 있어, 기업명 공표는 내년 조속하게 성령 개정 예정.) - 내정을 취소한 취직 미결정자를 정규고용한 사업주에의 장려금의 지급 등 ・ 내정을 취소한 취직 미결정자를 정규고용하는 사업주에게, 1명에 대해서 100만엔 (대기업50만엔)을 지급 ○ 고용 보험료의 낮추어 【생활 방위 대책】 (21년도 예산6,400억엔정도) - 2009년도의 1년간에 한하여, 0.4% (노사 각 0.2%)의 낮추어 (표준세대(연수500만엔)로 해 약 2만엔 상당) ○ 고용 보험의 급부 재검토 【생활 방위 대책】 (21년도 예산1,700억엔정도) - 비정규노동자에게 대한 적용 범위의 확대, 수급 자격요건의 완화 ・ 적용 대상의 범위를 「1년이상의 고용 전망」으로부터 「6개월이상」에 확대 ・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은 유기 계약 노동자의 수급 자격요건(현행1년)을 6월에 완화 - 취직이 곤란할 경우의 지원 강화 등 ・ 연령, 지역을 근거로 하고, 재취직이 곤란할 경우에 관한 고용 보험의 급부 일수를 60일분 연장 ※ 현행 제도:해고·고용 등의 경우의 급부 일수 90일(예:45세미만으로 피보험자기간 5년미만)～330일(예:45～60세미만으로 피보험자기간 20년이상)	○ 개호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재확보 등 【생활 대책】 (2차 보정, 21년도 예산계 1,700억엔정도) - 개호 보수변경 등에 의한 개호 종사자의 처우의 개선 ・ 2009년도 개호 보수변경(+3.0%)에 의해 개호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면서, 거기에 따르는 개호 보험료가 급격한 상승을 억제 등 (약 1,200억엔) - 개호 인재등의 긴급확보 대책의 실시 등 ・ 개호 복지사등 수학 자금대부사업의 확충, 모자가정의 어머니의 개호 복지사·간호사등의 자격취득 지원, 잠재적 유자격자등 양성 지원 등의 실시 ○ 출산·육아 지원의 확충 【생활 대책】 (2차 보정, 21년도 예산계 2,500억엔정도) -「안심 어린이 기금(가칭)」을 창설하고, 육아 지원 서비스의 긴급정비 ・ 도도부현(都道府縣)에 「안심 어린이 기금(가칭)」 (총액 약 1,000억엔)을 창설, 육아 지원 서비스를 긴급정비 (15만인분의 탁아소등의 정비) -「 육아 응원 특별수당」지급 ・ 둘째아이 이후의 유아교육기 (3세로부터 5세)의 어린이에 대하여, 3.6만엔의 수당를 지급 (20년도에 한한 긴급조치) - 안심・안전한 출산의 확보 ・ 필요한 회수(14회정도)의 임산부건강검진을 무료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・ 출산 육아 일시금의 증액(내년 10월부터 4만엔의 인상에 의해 42만엔에) -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 촉진 ・ 육아 휴업 등의 이용자가 처음으로 나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, 종전의 2명째까지로부터 5명째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, 2명째이후의 지급액을 증액(육아 휴업:60만엔→80만엔)등 ○ 장애인지원의 확충 【생활 대책】 (2차 보정 약 900억엔) - 장애인자립 지원법의 원활시행 ・ 2008년도까지의 장애인자립 지원 대책임시특례교부금에 근거하는 기금사업을, 2009년도이후도 연장하기 위해서, 기금의 증가를 행하고, 사업소의 지원, 신법에의 이행 지원 등을 실시 ○ 의료·연금대책의 추진 【생활 대책】 (2차 보정, 21년도 예산계 700억엔) - 고령자의료제도가 원활한 실시 ・ 소득이 낮은 계층의 장수의료보험료 부담의 경감 등 = 균등할:7할 경감 세대의 안, 피보험자 전원이 연금수입 80만엔이하의 세대에 대해서 9할 경감 = 소득 할:연금수입 153만엔으로부터 211만엔까지쪽에 대해서 5할 경감 - 의료대책의 추진 ・ 닥터 헬기의 일층의 활용을 꾀하기 위한 헬리포트(heliport) 정비, 간호사·조산사의 고도기능수득 등 - 신형 인플루엔자에 관계되는 【판데밋쿠와쿠친】의 제조능력강화 ・ 백신 메이커의 제조능력강화를 위한 제조 설비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조성 - 연금기록 문제에의 대응 ・ 표준보수등의 소급 정정 사안에 대해서, 불적정한 처리의 가능성이 있는 연금기록의 철저하게 조사, 상담에의 대응

실시여부	금융자금 및 중소기업지원 대책	생활자지원
2008년중 실시완료 및 우선실시	○ 중소기업자금융통 대책(1차 보정9조엔) 【안심 대책】 - 신용 보증 협회의 긴급보증 테두리를 6조엔 규모에 확충(한 사건당 보증 한도액:담보 없이 8,000만엔, 담보 유로 2억엔) [12월22일 시점의 승낙 금액: 약 2.9조엔]보증 테두리가 약 3.1조엔 남아있고, 연말의 자금수요를 향해서 만전인 체제 -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안전 네트워크 대부테두리를 3조엔 규모에 확충 ○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위기대응 업무의 발동 【생활 대책】 - 정책 투자 은행이나 쇼코츄킨(商工中金)을 통한 자금융통 지원 때문에,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위기대응 업무를 발동 (12월 11일) ○ 금융 자본 시장안정 대책 【생활 대책】 - 자사주 매입 규제의 완화·정부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시중매각의 일시 동결·은행의 주식보유 제한의 탄력적 운용 - 은행등의 자기 자본 비율규제의 일부탄력화·정보공개의 확충 등 공매 규제의 강화·생명보험회사의 안전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정부보조의 연장 등 ○ 금융기능 강화법의 활용·개선 【생활 대책, 생활 방위 대책】 - 나라의 자본참가에 의해 금융기관의 자본기반을 강화하고, 지역경제에 대하여 적절한 금융중개 기능을 발휘하도록, 금융기능 강화법을 개정하고, 쓰기를 개선 (12월12일에 성립) ○ 국제협력은행(JBIC)을 활용한 일본 업체의 해외사업대상 자금조달 등의 지원 【생활 대책, 생활 방위 대책】 - 국내의 수출 기업에 직접 신용을 제공하는 수출 신용 제도를 추가 - 일본 업체의 도상국에 있어서의 사업에 대한 융자 제도를 창설. 게다가, 해외현지법인에의 직접의 융자에 더해, 국내의 본사에서의 융자를 가능에 ○ 건설업의 자금조달의 원활 【안심 대책】 - 공공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청부대금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고, 건설 기업의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추진하는 「지역건설업 경영 강화 융자 제도」를 창설 (11월4일보다 실시) ○ 주택·부동산 시장 대책 【생활 방위 대책】 - 주택금융지원 기구의 「마을조성 융자 제도」의 대상사업을 확충하고, 주택·부동산사업자의 사업자금조달을 지원 (12월22일보다 실시. 20년도 대부테두리는 500억엔정도) ○ 하청 사업자의 보호 【안심 대책】 - 전국 48군데의 「하청인가 차 넣어 절」에 있어서, 중소사업자 때문에, 거래에 관한 「변호사무료상담 - 하청 사업자의 보호 때문에, 후생 노동부와 경제산업성·공정거래 위원회와의 사이에 「하청 보호 정보 네트워크」 (통보 제도)을 창설 (12월2일보다 실시) ○ 일본은행(日本銀行)에 의한 유동성공급(생활 대책, 생활 방위 대책으로, 일본은행에 의한 대응에의 기대를 표명. 일본은행이 이하의 조치를 결정) - 12월2일의 금융정책결정 회합에 있어서, 정책금리와 동(同)수준으로 금액에 제한을 마련하지 않는 대출제도의 창설 등을 결정 - 게다가, 12월19일의 동(同)회합에서는, 정책금리의 인하(0.3%→0.1%)에 맞추고, 장기국채의 매입 증액(1.2조엔/달→ 1.4조엔/월) , CP매입(매절 방식)을 포함시킨 기업금융면에서의 추가 조치의 도입 등을 결정.	○ 소비자정책강화 대책 【안심 대책, 생활 대책】 (1차 보정 약 20억엔) - 소비 생활 상담체의 강화, 일원적인 상담 창구의 정비를 향한 대처 - 소비 생활 상담 등의 정보공유체제의 강화를 향한 대처 - 수입 식품등의 안전대책의 강화 ・ 다수의 원재료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가공 식품의 잔류 농약검사 건수를 약 1.5배를 목표 - 식(食)의 안전대책의 강화 ・ 수입 식품에의 화학물질등의 혼입을 근거로 한 긴급검사의 실시

실시여부	금융자금 및 중소기업지원 대책	생활자지원
2차추경예산 및 FY2009년 예산 반영	○ 중소기업자금융통 대책이 더하는 확충(2차 보정30조엔) 【생활 대책】 - 9조엔 규모 (6조엔 규모의 긴급보증 테두리 및 3조엔 규모의 안전 네트워크 대부)을, 30조엔 규모에 확충 ○ 개정 금융기능 강화법에 근거하는 나라의 자본참가 테두리를 2조엔으로부터 12조엔에 확대(2차 보정10조엔) ○ 은행등 보유 주식취득 기구의 활용·강화(2차 보정20조엔) 【생활 방위 대책】 - 은행등 보유 주식취득 기구의 시중에서의 차입에 관련되는 정부보증 테두리를 20조엔으로 한다 ○ 중견·대기업의 자금융통 대책(2차 보정3조엔) 【생활 방위 대책】 - 정책 투자 은행이나 쇼코츄킨(商工中金)을 통한 자금융통 지원 때문에,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위기대응 업무의 대부테두리를 1조엔에 확대 - 위기대응 업무의 발동 (2조엔을 한도)등에 의해, 정책 투자 은행이 CP을 매입하는 스킴(scheme)을 창설 (년내에 실시) ○ 국제협력은행(JBIC)의 활용에 의한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사업에 대한 대부의 확충 【생활 대책】 ○ 건설업의 자금조달의 원활화(2차 보정13억엔) 【생활 대책】 - 「지역건설업 경영 강화 융자 제도」 (11월4일보다 실시)에 있어서의 건설 기업의 금리부담 등을 경감 ○ 「주택·부동산 시장 대책(21년도 대부테두리0.2조엔정도) 【생활 방위 대책】 - 주택금융지원 기구의 「마을조성 융자 제도」의 대상사업을 확충하고, 주택·부동산사업자의 사업자금조달을 지원 ○ 중소기업대책세제(국세:2,200억엔정도, 지방세:200억엔정도) 【생활 방위 대책】 - 법인세의 경감 세율(현행은, 년간의 소득액 800만엔이하의 부분에 대하여 22%)을 18%에 낮추어 - 점차 제자리에 돌려 환부 제도(금년도의 적자를 점차 제자리에 돌리고, 작년도의 흑자와 상쇄하는 것으로, 작년도 납부한 법인세액수를 환부)의 부활 ○ 상속세제, 금융·증권세제(국세:600억엔정도, 지방세:200억엔정도) 【생활 방위 대책】 - 중소기업의 사업계승을 원활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계승 세제(상속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 가격의 80%에 대응하는 상속세의 납세 유예)의 도입, 생전 증여에 의한 사업계승에 관계되는 증여세의 납세 유예 제도의 창설 등 - 상장주등의 배당 등에 대해서, 현행의 10% 경감 세율을 연장 - 소액투자를 위한 우대 조치(년간 100만엔, 5년간으로 누계500만엔까지의 상장주등에의 투자에 걸리는 배당 등을 비과세로 하는 조치)을 20% 원칙세율의 적용 시작시에 도입 - 확정 거출 연금에 있어서, 개인거출(매칭 거출)의 도입,또, 거출 한도액의 끌어 올려	○ 정액급부금의 실시 【생활 대책】 (2차 보정 약 2조엔) - 가계에의 긴급지원으로서, 1명당 12,000엔 (65세이상, 18세이하는 8,000엔 가산)을 급부(총액 2조엔, 금년도 내에 실시) ○ 소비자청의 창설등 소비자정책의 발본적강화 등 【안심 대책, 생활 대책】 (2차 보정: 약 268억엔) - 소비자청(가칭)의 창설과 지방의 소비 생활 상담 체제의 강화 ・ 지방 공공단체에 있어서의 소비 생활 상담 창구의 강화 등을 향한 집중적인 대응(도도부현(都道府縣)에 지방소비자행정활성화 기금(가칭)을 창설 등) - 식(食)의 안전대책의 강화 ・ 수입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향한 대전(맞붙음)의 추진 ・ 유해물질·잔류 농약의 분석 기기의 긴급배치 등 - 악덕상법·은행계좌입금 사기 대책의 추진 등(2차 보정: 약 4.2억엔)

실시여부	성장력 강화, 저탄소사회의 실현	지역활성화 및 농림수산업대책
2008년중 실시	○ 에너지 절약·대체 에너지 설비 등의 도입 가속 【안심 대책】 - 가정·기업·공공 시설 등에의 태양광발전 설비·에너지 절약 설비의 도입, 지역에서의 대규모태양광발전(메가 솔라)등의 도입 지원, 중소기업에의 신에너지 도입 확대, 기업이나 가정등에 있어서의 고효율설비·기기, 에너지 절약 가전등의 도입 등 ○ 교통 분야의 에너지 절약화, 모달(modal) 시프트 【안심 대책】 - 에코 카 등의 자동차, 선박, 철도, 항공등 에너지 절약형 교통 기관의 보급, 모달(modal) 시프트·물류효율화의 촉진 ○ 지역에 있어서의 대응의 추진 【안심 실현 대책】 - 목재·나무 질 바이오매스 리(이익)활용의 종합적 추진, 삼림흡수원 대책 ○ 환경 에너지 혁신적 기술의 개발 촉진 【안심 대책】 - 고효율차세대태양광발전, 이산화탄소회수·저류 기술등의 혁신 기술의 연구 개발의 가속 ○ 에너지 절약형 교통 기관의 개발 가속 【안심 대책】 ○ 국제 경쟁력 향상에 직결하는 기술개발의 촉진 등 【안심 대책】 - 「 혁신적 기술전략」이나 「첨단의료개발 특구(슈퍼 특구)」등에 근거하는, iPS세포재생의료연구등 국제 경쟁력에 직결하는 혁신적 기술의 개발 촉진 ○ 아름답게 활력 있는 고향만들기 【생활 대책】 - 지구·삼림 활동 계획, 아름다운 일본을 지키는 클린업(clean up) 대작전, 환경보전형의 지역만들기 등의 추진·지원 ○ 지역의 생활 배수 대책 【생활 대책】·선진적·에너지 절약 정화조, 대규모정화조의 정비 등의 지원	<고속 도로 요금 낮추어> 【안심 대책】 (20년도 예산: 약 1,000억엔) - 야간·심야 할인의 확충 (22～0시:3할인, 0～4시:4할인→5할인), 지방부의 휴일 낮의 할인의 도입(9～17시:5할인) <강한 농림수산업 창출 대책> 【안심 대책】 (1차 보정: 약 1,510억엔) ○ 농림수산업의 공급력·경쟁력강화 - 농지의 확보·유효이용(집적, 경작 포기 땅해소 등) - 수전 풀 활용 등에 열을 올리는 농업자의 경영 안정 - 에너지 절약, 자원 절약화의 촉진 등 ○ 국산농림수산물의 수요환기 - 식(食)의 안전·안심의 확보, 소비 확대를 향한 국민운동이나 국산원재료에의 전환의 촉진 등을 통한 국산농림수산물의 수요환기 - 쌀밥급식의 촉진, 쌀가루의 이용 확대등 미 소비 확대의 추진 등 ○ 자원관리·회복(수산업) - 수산자원의 관리·회복의 조치의 강화 등 ○ 새로운 시장의 창출 ·미노리(農) 상공연계의 촉진(연구 개발, 새 상품개발 및 판로확대) ·농림수산물·식품의 수출 촉진 <지방 공공단체에 대한 배려> 【안심 대책】 ○「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종합 대책」실시 때문에, 지방 공공단체에의 교부금 (지역 활성화·긴급안심 실현 종합 대책교부금. 일차 보정:260억엔) ○ 도로특정 재원의 잠정 세율의 실효 기간 동안의 지방세등의 수입감소를 보전(1차 보정: 약 656억엔)
2차추경예산 및 FY2009년 예산 반영		<지역활성화 대책> ○ 고속 도로 요금의 대폭 낮추어 【생활 대책】 (2차 보정:5,000억엔) - 대도시권을 제외하고, 평일의 전 시간대에서 3할인정도 - 대도시권을 제외하고, 승용차는 토. 일. 축재일 원칙 상한 1,000엔 - 수도고속, 한신(阪神) 고속의 휴일에 일정한 할인을 도입 ○ 지역기업재생, 상가활성화, ICT활용, PFI의 활용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- PFI에 대해서, 민간사업자가 창의연구를 발휘하기 쉬운 환경의 정비 등, 제도의 개정 등 ○ 관광 건국의 추진(2차 보정: 약 0.5억엔) - 관광 권의 정비, 숙박시설등 수용 체제정비, 출입국관리·사증 발급 체제정비 등의 관점을 근거로 한 비자의 재검토에 의한 외국인관광객확대 등 ○ 지역건설업의 새 분야에의 진출이나 타 산업과의 연계 사업등의 지원(2차 보정: 약 35억엔) - 지역건설업의 인재, 자기재등을 활용하고, 농업, 임업, 복지, 환경, 관광 등의 타 산업과 연계하면서 지역

실시여부	성장력 강화 및 저탄소 사회 실현	지역활성화 및 농림수산업대책
2차추경예산 및 FY2009년 예산 반영	○ 에너지 절약·대체 에너지 설비 등의 투자 촉진 세제 【생활 방위 대책】 (국세 1,300억엔 정도, 지방세 600억엔정도) - 에너지 절약·대체 에너지 설비 등에 대해서, 즉시 소각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투자감세 조치의 도입 ○ 해외자회사이익의 국내환류 【생활 방위 대책】 -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수취배당의 이익금불산입 제도의 도입 ○ 환경성능에 뛰어난 자동차에 대한 감면 【생활 방위 대책】 (국세 1,000억엔정도, 지방세 1,100억엔정도) - 환경성능에 뛰어난 자동차에 관계되는 자동차중량세·자동차취득세를 감면 ○ 지역의 생활 배수 대책 【생활 대책】 - 선진적·에너지 절약 정화조, 대규모정화조의 정비 등의 지원	의 활력향상에 이바지하는 복업화의 지원 ○ 안전·안심인 교통 공간확보와 물류 비용의 저감 등에 직결하는 교통 네트워크 정비(2차 보정: 약 794억엔) - 통학로나 교차점등의 교통 안전 대책, 철도역의 장애물 제거화, 지역 버스의 편리성향상, LRT프로젝트 등, 안전·안심인 보행·교통 공간의 확보 - 도시내 교통의 개선, 사람과 환경에 상냥한 도시공 다 교통의 구축을 위한 LRT정비의 추진 - 지방의 활력향상과 국제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도로 네트워크 정비, 도시철도의 정비 등 - 화물운송에 있어서의 중소·소규모기업대책 - 하네다 공항(羽田空港)이나 일반공항의 기능량 질화, 슈퍼 중추항만,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정비 등 ○ 지역만들기의 추진 - 아름답게 활력 있는 고향만들기 (지구·삼림 활동 계획, 아름다운 일본을 지키는 클린업(clean up) 대작전, 환경보전형의 지역만들기 등의 추진·지원)등 - 과소(過疎)지역에의 정주 촉진 - 나라가 정비한 시설에 있어서의 기름유출의 방지, 시설 주변의 소음대책등 ○「지역활력기반창조 교부금」을 창설(21년도 예산:9,400억엔) <농림수산업> (2차 보정:1,383억엔) ○ 농업의 장래를 짊어지는 경영의 육성과 고용 창출 등 【생활 대책】 - 수전 풀 활용에 열을 올리는 농업자에의 지원 - 담당자에게 대한 융자의 원활화, 시설 정비 등 지원, 신규에 취농하자로 하는 자의 실천 연수 지원 등 ○ 기술개발의 가속과 미노리(農) 상공연계, 국내농산물의 적극적 활용 등 【생활 대책】 - IT기술등의 농업에의 활용 촉진이나 농업관계 시설의 에너지 절약 추진 - 국산원료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미노리(農) 상공연계에의 지원이나 그 지방 농산물의 판로확대, 축산경영 안정 대책의 긴급실시 등 ○ 삼림·임업의 활성화 【생활 대책】 - 국산재료 주택등에의 이용 확대, 나무 질 바이오매스의 이용 촉진, 삼림에 있어서의 로그물정비의 추진 ○ 수산업의 활성화 【생활 대책】 - 수산물의 산지판매력의 강화, 어업용 자재·모이사료의 사용의 개선 합리화 등에 의한 수익력강화의 지원, 수산기반등의 정비 추진 등 ○ 식에 대한 신뢰 확보 등 【생활 대책】 - 사고미곡과는 모르게 판매·가공한 선의의 사업자에의 지원 등 ○ 친절로 이해하기 쉬운 농림수산행정의 전개 【생활 대책】 <지방 공공단체 지원책> ○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를 증액 【생활 방위 대책】 (21년도 예산:1조엔) ○ 지방자치체(일반회계)에 장기·저금리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, 지방공동의 금융기구(가칭)을 창설 【생활 대책】 - 지방공영기업등 금융기구의 개조에 의해 대응 ○ 지역이 세심한 인프라스트럭처(infrastructure) 정비등을 촉진하기 위해서, 「지역활성화·생활 대책임시 교부금」을 교부 【생활 대책】 (2차 보정:6,000억엔)

	2008년중 실시	2차추경예산 및 FY2009년예산 반영
주택 및 방재 대책	【안심 대책】 (1차 보정: 약 7,300억엔) ○ 에너지 절약 장수명주택의 진흥·주택투자의 활성화 - 「 장기우량주택」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 장수명주택의 취득 지원 조치 (우량한 주택취득 지원 제도에 있어서의 대부의 즈음의 우대 금리의 적용 범위를 확대 등) ○ 고령자의 안심·안전을 유지하는 거주 공간의 확보 등 - 건축물에 있어서의 건강피해의 방지 촉진 ○ 아동을 지진으로 지키는 학교만들기 등의 추진(1차 보정: 약 2065억엔) - 대규모지진에 의한 도괴의 위험성이 높은 공립초중학교시설 (약 1만동)등의 내진화 사업의 가속화 등 ○ 지진, 집중호우등에 의한 재해의 복구·방재, 소방등의 대책(1차 보정: 약 4,400억엔) ○ 안전·안심의 확보 - 식(食)의 안전에 관계되는 사범등 범죄대책, 재해파견 등의 확보, 조수보호 관리 대책, 제품화재원인 조사의 충실	○ 고령자의 안심·안전을 떠받치는 거주 공간의 확보 등 【안심 대책】 - 고령자가 지역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, 공적 임대 주택 등의 공급 등에 의한 주택 안전 네트워크의 충실 - 복지와의 연계가 떨어진 주택정비, 【리바스모게지】의 보급 ○ 주택감세나 용적률의 완화등에 의한 주택투자의 촉진 등 【안심 대책, 생활 대책, 생활 방위 대책】 (2차 보정:145억엔, 21년도 세제개정(국세:1,800억엔정도, 지방세:1,700억엔 정도)) - 주택융자 감세의 최대공제 가능액수 (현행160만엔)을 과거 최대의 600만엔 (장기우량주택의 경우. 일반주택의 경우는 500만엔)에 끌어 올려.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은 개인주민세로부터도 공제 - 자기자금에서의 장기우량주택의 취득이나 에너지 절약(태양광발전 장치를 포함한다) - 장애물 제거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감세 조치를 창설 - 신규취득 토지에 관계되는 양도 이익과세의 특례조치의 창설, 등록 면허세의 경감 등 토지 세제의 대폭확충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- 지역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증권화, 유동화의 촉진 - 각종토지세제의 연장·확충 등 - 우량한 주택취득 지원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한 육아 세대등의 주택의 취득·확보 지원, 주택·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개수에 대한 조성, 목조주택의 진흥·2지역 거주 등의 촉진 - 용적률의 완화 (고도인 환경대책을 행하는 건축물, 우량한 도시개발 프로젝트 등) - 지방도시등에 있어서의 우량한 도시개발 프로젝트에의 지원 등 ○ 공공 시설의 내진화 등 방재대책 【생활 대책】 (2차 보정:학교등 내진화 787억엔, 집중호우·내진대책등 방재대책 1,236억엔) - 학교나 주택등의 내진화의 일층의 가속과 공공 시설의 지진 재해 대책 (공항, 상하수도시설, 폐기물처리 시설, 교정 시설, 관청시설 등)·그린화·에코 개수 등 - 도로다리등 노후화가 나아가는 자본 저장의 장수명화 등의 보전 대책(교량등의 점검 및 대책, 노화한 제방이나 항만시설, 하수도시설의 정비) - 집중호우, 해일·고조 대책의 실시, 기상시설의 정비, 도시공원의 정비 등에 의한 도시방재 기능의 향상 등 - 구조 기술향상을 위한 소방단자기재의 충실등 재해대책의 강화나, 독실형 점포등의 소방용설비 등의 자기점검 실시 지원 등 긴급방화대책의 철저